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5. 25 선고 2021가단1359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
담당변호사 박환택

피 고 B
소송대리인 C
변 론 종 결 2022. 4. 13.
판 결 선 고 2022. 5. 25.

주 문

1. 피고와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20. 12. 3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2. 8. 접수 제787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각 사실은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, 경산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(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9343)에서 2014.

4. 29. “D은 원고에게 55,306,185원 및 그중 2,500만 원에 대하여는 1998. 3. 23.부터, 500만 원에 대하여는 1998. 3. 20.부터, 7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. 2. 11.부터,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3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.

나. D은 2020. 12. 3.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/3 지분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2020. 12. 8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2. 판단

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원고의 D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되므로,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에 기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,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D이 피고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가 매매대금을 1,750만 원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350만 원은 C(피고의 모)이 E(D의 처)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돈은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E의 계좌로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바,

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재산과 채무 상태 및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D의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, 을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재석

별지목록

[집합건물] 부산광역시 연제구 F에 있는 G건물 제4층 H호

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광역시 연제구 F에 있는 G건물

[도로명주소]

부산광역시 연제구 I

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6층

공동주택 및 업무시설

1층 20.84㎡

2층 119.4㎡

3층 119.4㎡

4층 119.4㎡

5층 119.4㎡

6층 162.16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부산광역시 연제구 F 대 331.3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4층 H호 철근콘크리트 구조 49.28㎡

대지권의 표시

소유권대지권 331.3분의 30.87. 끝.

